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안동지방법원 및 안동가정법원 설치〉

■ 김형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636호)

2024. 1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성 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안동지방법원 및 안동가정법원 설치	3
참고자료. 비용추계 결과	1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형동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8. 8.

3. 회 부 일 : 2024. 8.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구지방법원과 대구가정법원이 경상북도 전체를 관할하고, 대구지방법원에 8개의 지원과 15개의 시·군법원, 대구가정법원에 7개의 지원을 설치하도록 함.

그런데 대구지방법원까지 안동시청에서부터는 약 102km, 영덕군청에서부터는 약 130km로 대중교통 이용 시 각각 편도 2시간 30분이 소요되어 경북 북부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이 몹시 떨어지는 실정임.

한편 안동시는 경상북도에서 면적이 가장 큰 시이자 경북 북부 지역의 중앙에 위치하여 교통의 요지이며, 경북도청이 안동과 예천으로 이전함에 따라 인구 유입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을 승격시켜 안동지방법원 및 안동가정법원을 신설하고 상주지원·영덕지원·의성지원을 안동지방법원 소속으로 변경하며 예천군의 관할법원을 상주지원에서 안동지방법원 본원으로 이관하여 관할 지역주민들의 법원에 대한 지리적 접근

성을 향상하고,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모든 경북도민들이 보다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7).

III. 검토의견

1. 안동지방법원 및 안동가정법원 설치

가. 개정안의 내용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별표 1]부터 [별표 10]까지와 같이 규정됨.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설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개정 2016. 12. 27.>

②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한다.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개정 2016. 12. 27.>

1. 각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2.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4
3. 각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5
4.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6
5. 각 시·군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7
6. 항소사건(抗訴事件) 또는 항고사건(抗告事件)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별표 8
7.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9
8. 회생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10

- 개정안은 이 중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를 개정하여 대구지방법원 및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을 폐지하면서 안동지방법원과 안동가정법원을 신설하고, 현재 대구지방법원 및 대구가정법원 산하인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을 각각 안동지방법원 및 안동

가정법원 산하로 하며, 예천군의 관할법원을 상주지원에서 안동지방법원 본원 및 안동가정법원 본원으로 이관하는 한편,

[별표 2] 및 [별표 7]을 개정하여 시·군법원의 관할법원도 대구지방법원과 신설 안동지방법원의 관할에 맞추어 조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및 개정내용>

개정대상	개정내용
[별표 1] 각급 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폐지 · 안동지방법원 및 안동가정법원 신설 · 상주·의성·영덕지원 관할법원 조정 (대구지방/가정법원→안동지방/가정법원)
[별표 2] 시·군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 시·군법원 관할법원 조정
[별표 3]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폐지 · 안동지방법원 신설 및 상주·의성·영덕지원 관할법원 조정(대구→안동지방법원) · 예천군 관할법원 조정(상주지원→안동본원)
[별표 5]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폐지 · 안동가정법원 신설 및 상주·의성·영덕지원 관할법원 조정(대구→안동가정법원) · 예천군 관할법원 조정(상주지원→안동본원)
[별표 7] 시·군법원의 관할구역	· 시·군법원 관할법원 조정

○ 개정안에 따라 현행 대구지방법원 및 대구가정법원 산하 지원들의 관할법원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며, 시행일은 2028년 3월 1일임.

현 행		개 정 안		시행일
대구 지방법원	서부·안동·경주·포항·김천·상주·의성·영덕지원	대구지방법원	서부·경주·포항·김천지원	2028년 3월 1일
		대구가정법원	경주·포항·김천지원	
대구 가정법원	안동·경주·포항·김천·상주·의성·영덕지원	안동지방법원	상주·의성·영덕지원	
		안동가정법원	상주·의성·영덕지원	

나. 안동지방법원 신설에 따른 영향 분석1)

1) 관할인구

-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안동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은 현행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의 관할구역(안동시, 영주시, 봉화군)에 ‘예천군’이 추가되고, 현행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의 관할구역을 포괄하게 됨.



- 이에 따라 신설 안동지방법원의 관할인구를 추정해보면, 2023년 12월말 기준 33만 8,062명으로 나타남.

<개정안에 따른 안동지방법원의 관할인구>

지방법원 & 가정법원	지원	관할구역	면적(km ²)	인구(명)
안동지방법원 & 안동가정법원 ²⁾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예천군	4,055.79	338,062
	상주지원	상주시, 문경시	2,166.53	162,613
	의성지원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2,635.23	97,093
	영덕지원	영덕군, 영양군, 울진군	2,547.19	96,385

1) 법원행정처 분석·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신설 안동지방법원의 관할인구(33만 8,062명)는 다른 18개 지방법원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며, 전국 18개 지방법원 평균 관할인구(163만 3,792명)의 약 21% 수준에 해당함.

<지방법원별 관할인구 비교>

순위	법원	관할인구(명)
1	수원지방법원	3,446,821
2	인천지방법원	2,997,410
3	서울북부지방법원	2,242,180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73,991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679
6	대구지방법원	1,916,333
7	대전지방법원	1,878,834
8	광주지방법원	1,764,439
9	서울동부지방법원	1,726,248
10	울산지방법원	1,458,783
11	서울서부지방법원	1,349,849
12	부산지방법원	1,284,638
13	창원지방법원	1,183,485
14	의정부지방법원	1,047,220
15	청주지방법원	1,043,527
16	전주지방법원	895,656
17	제주지방법원	675,252
18	춘천지방법원	429,818
19	안동지방법원 및 안동가정법원(가칭)	338,062

2) 예상 사건 수

- 현행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의 접수사건 수를 기준으로 신설 안동지방법원의 접수사건 수를 추정해 보면, 약 1,797건(민사 및 형사 1심 본안사건 기준, 2023년 12월말)으로 예상²⁾됨.

2) 현행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의 관할구역에는 '예천군'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제외하고 산출

- 신설 안동지방법원의 연간 접수사건 수(1,797건)는 다른 18개 지방 법원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며, 전국 18개 지방법원 평균 사건 수(1만 7,755건)의 약 10% 수준에 해당함.

<지방법원별 사건 수 비교>

순 위	법 원	민사		형사		합계
		합의	단독	합의	단독	
1	서울중앙지방법원	6,638	55,102	1,228	9,773	72,741
2	인천지방법원	971	12,834	1,178	12,597	27,580
3	수원지방법원	1,554	12,422	955	10,408	25,339
4	서울남부지방법원	1,218	12,872	577	7,085	21,752
5	서울서부지방법원	832	14,266	405	4,527	20,030
6	광주지방법원	857	8,278	762	7,183	17,080
7	서울북부지방법원	530	8,153	555	6,829	16,067
8	서울동부지방법원	1,026	9,178	424	5,213	15,841
9	부산지방법원	722	7,436	745	6,724	15,627
10	대구지방법원	780	7,343	690	6,769	15,582
11	대전지방법원	742	7,672	635	6,472	15,521
12	울산지방법원	434	4,223	493	6,343	11,493
13	의정부지방법원	401	4,343	436	4,629	9,809
14	청주지방법원	345	3,934	339	3,837	8,455
15	창원지방법원	398	3,741	360	3,945	8,444
16	전주지방법원	289	4,362	286	3,062	7,999
17	제주지방법원	304	3,107	366	3,346	7,123
18	춘천지방법원	172	1,218	167	1,555	3,112
19	안동지방법원(가칭)	52	726	69	931	1,797

3) 사법 접근성

- 신설 안동지방법원 본원은 현행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의 관할 사건들과 현재 대구지방법원 본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안동지원·상주지원·의성지원·영덕지원 단독사건의 향소심을 담당하게 될 것임.

○ 신설 안동지방법원 관할구역 내 지역(안동·상주·의성·영덕지원)의 각 시·군청에서 항소심 관할법원까지의 사법 접근성을 비교해보면, 안동지방법원 설치로 대부분의 지역의 사법 접근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봉화군, 문경시, 군위군, 영덕군, 울진군 등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 시 대구지방법원보다 신설 안동지방법원까지의 소요시간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법원행정처는 현재 대구광역시 중심으로 발달한 대중교통체계로 인한 것으로,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분석하고 있음.

<안동지방법원 관할구역의 각 시·군청에서 관할법원까지 사법 접근성 비교>

	출발지	도착지	시간		거리 (km)	도착지	시간		거리 (km)
			자동차	대중교통			자동차	대중교통	
안동지원	안동시청	대구지법	1시간 28분	2시간26분	98.6	안동지법 안동가정 (가칭)	8분	17분	3.3
	영주시청		1시간 43분	2시간20분	128		39분	1시간53분	36.3
	봉화군청		1시간 57분	2시간48분	146.7		56분	3시간	45.2
상주지원	예천군청		1시간 36분	2시간20분	118.3		36분	1시간38분	39
	상주시청		1시간 23분	3시간48분	100.2		57분	3시간5분	73
	문경시청		1시간 28분	2시간21분	115.8		58분	2시간34분	64.4
의성지원	의성군청		1시간 13분	2시간54분	74.7		30분	1시간41분	30
	군위군청		58분	2시간36분	53.7		39분	2시간48분	47.2
	청송군청		1시간 33분	2시간26분	116.7		37분	2시간3분	41.1
영덕지원	영덕군청		1시간 53분	2시간21분	129.7		58분	2시간48분	77.8
	영양군청		2시간3분	2시간52분	149.4		1시간 9분	1시간58분	56.9
	울진군청		2시간 47분	3시간14분	193.5		1시간 50분	4시간41분	114.1

다. 검토의견

- 개정안은 안동지방법원 및 안동가정법원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는 ① 신설 안동지방법원 및 안동가정법원의 관할인구 및 사건 수 규모의 적정성, ② 신설 안동지방법원 및 안동가정법원 관할구역 내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 현황과 개선의 정도, ③ 지방법원 승격 또는 신설을 희망하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④ 신규 법원 설치에 따라 수반되는 재정부담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안동지방법원이 신설되면, 신설 안동지방법원 관할구역 내(현행 대구지방법원 안동·상주·의성·영덕지원의 관할구역 및 예천군)의 주민들의 1심 단독사건에 대한 항소심 사건에 대한 사법 접근성은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신설 안동지방법원의 관할인구 및 예상 사건 수가 전국 18개 지방법원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인 점, 신설 안동지방법원에 비해 관할인구 및 사건 수가 훨씬 많으면서 지방법원으로 승격을 희망하고 있는 성남, 고양, 안산 지역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 등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626억 5,200만원(연평균 125억

3,000만원)으로 추정됨. 이에는 안동지방법원과 안동가정법원이 공동으로 사용할 청사 신축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 공사비와 부대경비, 34명의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검찰청법」 제3조제1항³⁾에 따라 안동지방법원에 대응하여 설치하는 안동지방검찰청 신설에 따른 비용은 현행 안동지청의 청사, 공무원 전입을 통해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계에서 제외되었음(참고자료. 비용추계 결과 참조).

3) 「검찰청법」 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①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

라. 관계기관 의견

- 법원행정처는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 및 안동가정법원으로 승격하는 경우 관할 지역 주민들의 항소심 등에 대한 사법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신설 안동지방법원의 관할인구 및 사건 수가 타 지방법원 대비 과소하여 전국에서 가장 작은 규모의 지방법원이 되는 점, 관할인구 수가 감소 추세에 있는 점, 관할인구 및 사건 수 규모가 지방법원 본원급에 해당하면서 지방법원 승격을 원하는 성남, 고양, 안산 등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71

참고자료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안동지원을 승격하여 안동지방법원과 안동가정법원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73억 8,800만원, 2030년 25억 2,2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626억 5,200만원(연평균 125억 3,000만원)으로 추계

[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계	연평균
안동지방법원 및 안동가정법원으로의 승격 (안 [별표 1] 등)	27,388	28,014	2,256	2,472	2,522	62,652	12,530

주: 1. 안동지방법원 및 안동가정법원으로의 승격(안 [별표1] 등)은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이고, 유사사례인 울산지방법원과 울산가정법원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2.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2028년의 보수, 기관 부담금, 기본경비는 10개월분을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개정안에 따라 안동지원을 승격하여 안동지방법원, 안동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비용을 추계하고, 안동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안동지방검찰청은 현행 안동지청의 청사, 공무원 전입을 통해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계에서 제외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안동지방법원과 안동가정법원이 공동으로 사용할 청사 신축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 공사비와 부대경비, 34명의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 안동지방법원과 안동가정법원이 설치되는 경우 판사가 증원될 수 있으나, 판사의 증원여부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판사의 증원은 고려하지 않아 증축 면적 산정과 증원 대상에서 제외
- 개정안 부칙에서 시행일을 2028년 3월 1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6년부터 2년 동안 청사를 신축하고, 2028년부터 법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